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I 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407호
2. 발 의 자 : 김혜련 의원
3. 발의일자 : 2018. 3. 5.
4. 회부일자 : 2018. 3. 7.

II . 제안이유

- 현재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교육감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
(안 제8조제2항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
2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(안건 참고).
3. 기 타

입법예고(2018.3.12~3.19)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김혜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407호로 발의되어 2018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교원중심의 다문화교육 연수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존중,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통과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이와 관련해서 현행 「다문화가족법」 제5조제1항에서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“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입법적 조치라 하겠는바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

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(민주시민교육과-3344, 2018.3.29).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관계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

[시행 2017.3.21.] [법률 제14702호, 2017.3.21., 일부개정]

- 제5조(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지상파방송사업자"라 한다)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·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.